

채용분야	시설(기계)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4. 건설	03. 건축	03. 건축설비설계·시공	04. 건축설비유지관리
			15. 기계	05. 기계장치설치	02. 냉동공조설비	03.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05. 소방	02. 소방방재	01. 소방(기계)	04. 소방안전관리
치과병원 주요사업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합니다.					
직무수행 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운전, 점검, 진단을 통하여 최상의 성능과 효율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과 설비수명을 연장시키는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에 따른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 수행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오수정화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이송설비, 의료가스설비, 도시가스배, 소방설비, 특수설비등 ○ (기계설비 운전) 공정별 기계 설비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 조건으로 운전하고 매뉴얼 활용을 통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 ○ (기계소방 유지관리) 기계소방 시설 운전, 점검, 진단을 통하여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무 수행 ○ (시설 관리 관련 행정) 시설물과 관련된 설비의 연간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견적 의뢰, 발주,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제출, 대책을 수립하는 일 ○ (시설 유지·보수 공사관리) 기계설비 공사계획 수립, 설계도서 관리(기본설계, 장비 용량계산, 원가 산출), 공정 관리 기준 수립 등을 통하여 각종 공사 시공업무 관리 ○ 기간 에너지(전기·온실가스·연료 등) 이용 합리화 관리 및 에너지사용량 분석 ○ 시설물 각종 법적 검사/점검 수행					
능력단위 (필요지식 /기술)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이해, 주요 시설장비에 대한 실무 경험과 지식, 열역학, 유체역학에 대한 기초 지식, 공조설비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 설비용 장비/자재 종류 및 특성 이해, 건축기계설비 및 관련법규 이해, 기계설비의 제원, 특징 및 구조의 이해 등 ○ (공조냉동 유지보수관리)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연소공학 기초지식, 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능력, 각 장치 및 부속설비 계통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 ○ (기계소방 유지보수관리) 소방기계시설 조작, 유지 보수 및 시험점검, 소방시설 설계서류(설계도면, 시공상세도, 계산서등) 이해 ○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물 도면 이해 능력, 법정 검사계획 및 일정표 파악 능력, 계측장비활용 기술, 감시반 및 제어반의 운전·보수 기술, 설비 사고유형별 대처능력, 상시 사고 예방관리 활동 및 대처 능력, 장비의 운전 및 정비 매뉴얼 판독 능력, 민원 원인 파악에 대한 분석 및 처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객관적이고 합리적 태도, 분석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자세, 세밀하게 도면과 규격서를 검토하려는 자세, 관계자와의 협력적 태도, 기술 기준 준수, 일정계획을 준수하려는 태도, 사전 예방 점검하려는 태도, 법규와 규정에 관한 분석적 태도,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개방적 태도, 민원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사고 상황 및 위험요소 파악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업무규정 준수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www.ncs.go.kr					

※ 상기 직무는 전문기관 컨설팅 및 사내 검토를 거쳐 도출 된 회사 내 가장 대표적인 직무이며, 대표적인 직무 외의 다른 직무도 입사 후 수행할 수 있음.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참고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다) 기사	
		라) 산업기사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라) 초급 건설기술인	3년 이상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